

## 2003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의안	
번호	

제안일자 : 2003. 5. 28.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# 1. 提案理由

지방자치법제36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~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, 200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.

### 2. 主要骨字

-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. (2003.6.21. ~ 2003.6.27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(9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.

### 3. 關係法規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~ 제19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## 2003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### 1. 監査의 目的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~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, 200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監査期間

2003. 6. 21 (토) ~ 2003. 6. 27 (금) [7일간]

### 3. 監査實施 對象機關

0 마포구의회사무국

### 4.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

구분	감사위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운영위원회	[위원장] 한대운 [간사] 박지위 [위원] 김순금, 남두희 신동선, 윤동현, 윤정웅, 이종일, 이천규	마포구의회 사무국	운영 위원회실	김건재	도대오

## 5. 監査日程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준비 단계	'03.5.22.(목) ~ 6.7.(토)	○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○감사관계 자료수합	
	5.28.(수)	○감사계획서 수립, 채택 ○서류제출, 증인출석요구서 이송	
	5.28.(수)	○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○감사계획 통보	
	6.9.(월) ~ 6.20.(금)	○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	
실시 단계	'03.6.21.(토) ~ 6.27.(금)	○위원장의 감사선언 ○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-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○감사종료 선언	
감치 사리 결단 과계	'03.6.28.(토) ~ 7.7.(월)	○감사결과보고서 작성 ○감사결과보고서 채택 ○감사결과 보고 (본회의) ○감사결과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이송	

## 6. 監査要領

감사는 의회사무국 2003년도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보고및 질문,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## 7. 行政事項

가.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.

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## 2003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일자 : 2003. 5. 27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### 1. 提案理由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,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,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함.

### 2. 主要骨字

-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. (2003. 6. 21 ~ 2003. 6. 27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건설교통국 및 동사무소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(10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실 및 동사무소로 한다.

### 3. 關係法規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~ 제19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## 2003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### 1. 監査의 目的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,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,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함.

### 2. 監査期間

2003. 6. 21 (토) ~ 2003. 6. 27 (금) [7일간]

### 3. 監査實施 對象機關

- 0 마포구청 (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건설교통국)
- 0 동사무소 (24개동)

### 4.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행정건설 위원회	[위원장] 신 봉 현 [간 사] 오 윤 수 [위 원] 김 광 섭, 김 평 전, 김 호 철, 남 두 희, 박 지 위, 유 남 렬, 유 응 봉, 정 형 기	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건설교통국, 동사무소	행정건설 위원회실 및 동사무소	박관수	서정길

## 5. 監査日程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준 비 단 계	2003.5.22 (목) ~ 6. 7 (토)	○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○ 감사관계 자료수합	
	5.27 (화) ~ 5.28 (수)	○ 감사계획서 수립, 채택 ○ 서류제출, 증인출석요구서 이송	
	5.28 (수) ~ 5.29 (목)	○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○ 감사계획 통보	
	6. 9 (월) ~ 6.20 (금)	○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	
실 시 단 계	2003.6.21 (토) ~ 6.23 (월)	○ 감사시작 선언 ○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- 동장 인사 및 소속직원소개 - 증인선서 - 동사무소 감사	감사대상 3개 동 선정
	2003.6.24 (화)	○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- 감사담당관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감사담당관 감사 ○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기획재정국장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기획예산과 감사 - 재 무 과 감사 - 세 무 1과 감사 - 세 무 2과 감사	
	2003.6.25 (수)	○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행정관리국장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총무과 감사 - 주민자치과 감사 - 문화체육과 감사 - 민원봉사과 감사	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실 시 단 계	2003.6.26 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</li> <li>-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</li> <li>- 증인선서</li> <li>- 교통행정과 감사</li> <li>- 교통지도과 감사</li> <li>- 토 목 과 감사</li> <li>- 치 수 과 감사</li> </ul>	
	2003.6.27 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결과 광평</li> <li>○ 감사종료 선언</li> </ul>	
감처 사리 결단 과계	2003.6.28 (토) ~ 7. 8 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결과보고서 작성</li> <li>○ 감사결과보고서 채택</li> <li>○ 감사결과 보고(본회의)</li> <li>○ 감사결과 처리 및 요구사항 이송</li> </ul>	

## 6. 監査要領

감사는 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건설교통국의 각과별, 동사무소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## 7. 行政事項

가. 위원장은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.

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## 2003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의안	
번호	

제안일자 : 2003. 5. 27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# 1. 提案理由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파악,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 및 마포개발공사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 및 마포개발공사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, 200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.

### 2. 主要骨子

-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. (2003.6.21 ~ 2003.6.27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생활복지국, 도시관리국, 보건소,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(12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실 및 동사무소로 한다.

### 3. 關係法規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~ 제19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

## 2003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### 1. 監査의 目的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파악,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 및 마포개발공사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 및 마포개발공사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 하고, 200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監査期間

2003. 6. 21 (토) ~ 2003. 6.27 (금) [7일간]

### 3. 監査實施 對象機關

- 마포구청 (생활복지국, 도시관리국, 보건소)
- 동사무소 (24개동)
- 마포개발공사

### 4.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복지도시 위원회	[위원장] 이 매 숙 [간 사] 정 해 원 [위 원] 김 순 금, 박 영 길 송 태 섭, 신 동 선 윤 동 현, 윤 정 용 이 중 일, 이 천 규 한 대 운, 한 수 균	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 건 소 동사무소 마포개발공사	복지도시 위원회실 및 동사무소, 마포개발공사	김건재	도대오

## 5. 監査日程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준 비 단 계	'03.5.22.(목) ~ 6. 7.(토)	○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○ 감사관계 자료수합	
	5.27.(화)	○ 감사계획서 수립, 채택 ○ 서류제출, 증인출석요구서 이송	
	5.28.(수)	○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○ 감사계획 통보	
	6. 9.(월) ~ 6. 20.(금)	○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	
실 시 단 계	'03. 6. 21.(토)	○ 위원장의 감사선언 ○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	
	'03. 6. 23.(월)	○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생활복지국장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사회복지과 감사 - 가정복지과 감사	
	'03. 6. 24.(화)	○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지역경제과 감사 - 청소환경과 감사	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실 시 단 계	'03.6. 25.(수)	○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도시관리국장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주택과 감사 - 도시관리과 감사 - 건축과 감사 - 지적과 감 - 공원녹지과 감사	
	'03. 6. 26.(목)	○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- 보건소장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보건위생과 감사 - 지역보건과 감사 - 의약과 감사	
	'03. 6. 27.(금)	○마포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	
감사 결과 처리 단계	'03. 6. 28.(토) ~ 7. 7.(월)	○감사결과보고서 작성 ○감사결과보고서 채택 ○감사결과 보고(본회의) ○감사결과 처리 및 요구사항 이송	

## 6. 監査要領

감사는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각과, 동사무소, 마포개발공사별로 구 행정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,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## 7. 行政事項

가.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.

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